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3 선고 2019가단5147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2020. 6. 5.

판결 선고2020. 7. 3.

주 문

1. 피고 C, D은 망 E(F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9,214,512원 및 그 중 각 19,749,679원에 대하여 각 2018. 7. 1.부터 2019. 12. 26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신현일

별지